예 산 총 칙

2011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합계 | 171,624,928 | 5,148,748 |
| 일반회계 | | 166,606,168 | 4,998,185 |
| 특별회계 | | 5,018,760 | 150,563 |
| | 기타특별회계 | 5,018,760 | 150,563 |
| |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| 417,473 | 12,524 |
| |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| 232,778 | 6,983 |
| | 주차장 특별회계 | 3,013,839 | 90,415 |
| |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| 359,264 | 10,778 |
| |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| 964,000 | 28,920 |
| | 기반시설 특별회계 | 31,406 | 942 |

- 제 2조 세입 ·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 · 세출 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671,158천원으로 한다.
- 제 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,2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